

##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유지의 관건은 ‘농장단위 차단방역’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지난 10월 2일, 농식품부 및 방역관련 기관·단체(309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13.10.2~'14.5.31)이 시작됨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 안행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격상(관심→주의)이 통보되었습니다. 시베리아 등 북방의 야생조류가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가 최근

에 발표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지난해('12) 우리나라로 이동한 겨울철새의 개체수는 그 이듬해('11) 보다 증가(108만→113만)하였다는 것과 국내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예찰검사에서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국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기록을 보면, 현재까지 4차례 발생 모두 철새들이 국내로 이동하는 시기(2003년 12월, 2006년 11월,

2008년 4월, 2010년 12월)에 발생하였고,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으로 판단하였으며, 저병원성 AI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과정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병원성이 높은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 9월 5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이후 2년간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15년간의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호주의 사례를 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고, 정부의 방역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금농장주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실천입니다. 내 농장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 줄 수 없다는 의식과 함께 방역수칙의 철

저한 실천만이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는, 우선 축사 내·외부 소독을 생활화하며, 외부차량·사람 등 출입통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1588-9060/4060 또는 1666-0682)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위한 차단방역 수칙 》

- 가금농가의 철새도래지, 서식지 출입금지
- 축사그물망 설치, 주변 청소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
- 1일 2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실시
- 모든 축사 출입구 소독조 설치
- 축사 내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
-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소독 철저

